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 및 한파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 등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 범위로 추가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신고 등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7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급과 협의서의 공개 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나. 소규모 공장시설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
공장의 설립 중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2,000㎡ 이상으로 완화
- 다.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

- 시·도지사가 지역별 폭염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2) 행정안전부장관이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운영
- 라.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도지사가 지역별 한파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운영
-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대행자의 등록요건 업무를 추가 또는 명칭의 개정 등을 규정
- 바.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관련 대행계약 분리 체결(안 제32조의4)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와 대행계약 체결 시 협의 대상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
- 사.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안 제61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아. 지역안전도 진단 방법 및 주기 일원화(안 제72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의 실시 주기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
- 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권한 상향,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신고

등의 관리업무 전문기관에 위탁·처리(안 제73조)

- 1)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자와 협의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협의권자를 상위 행정기관으로 상향 조정
-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신규·변경 등록 및 휴업·폐업·재개신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의 공개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4호 중 “공장의 설립”을 “공장의 설립 중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2장제5절(제2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폭염

제24조의2(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

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폭염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작성·운용 할 수 있다.

제2장제6절(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한파

제24조의3(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한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한파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작성·운용 할 수 있다.
-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의”를 “호 및 제4항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를 “세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해복구사업 평”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④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제32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임무와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의2제1항 중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의 방법으로”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저감노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시·도지사 및”을 “시장·군수·구청장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시·군·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재개신고

별표 3 제2호마목1) 중 “협의”를 “협의 업무”로 하고, 같은 1) 3명 이상의 기술인력란 나)(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토목기사”를 “토목기사, 방제기사”로 하며,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별표 3 제2호마목2) 3명 이상의 기술인력란 나) 중 “토목기사”를 “토목기사, 방제기사”로 하고, 같은 목 3) 중 “수립”을 “수립,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로 하며, 같은 3) 3명 이상의 기술인력란 나) 중 “다른 토목기사”를 “다른 토목기사, 방제기사”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별표 3 제2호마목4) 3명 이상의 기술인력란 나) 중 “토목기사”를 “토목기사, 방제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평가”를 “분석·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5) 3명 이상의 기술인력란 나) 중 “토목기사”를 “토목기사, 방제기사”로 하고, 같은 목 6) 중 “부문)”을 “부문) 업무”로 하며, 같은 6) 4명 이상의 기술인력란 나) 중 “토목기사”를 “토목기사, 방제기사”로 하고, 같은 목 7) 중 “부문)”을 “부문) 업무”로 하며, 같은 7) 4명 이상의 기술인력란 나) 중 “토목기사”를 “토목기사, 방제기사”로 하고, 같은 목에 8)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2명 이상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자원 개발기술사 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제기사 또는 마목1)나) (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수자원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토목공학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 규정, 별표 3 제2호마목2)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검토위원회</u> 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u>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u>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u>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u>) <u>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u>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의 공개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u>공장의 설립</u>	14. ----- --- <u>공장의 설립 중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u>
15. ~ 28. (생략)	15. ~ 2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절 폭염
<신설>	제24조의2(지역별 폭염대책의 수

	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폭염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
--	---

<u><신 설></u> <신 설>	호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작성·운용할 수 있다. <u>제6절 한파</u> 제24조의3(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한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축산업 및 기반시설 등의 한파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여 행
--	---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작성·운용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 설></u> 3. ~ 4의2. (생략) 5.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 ----- ----- ----- 호 및 제4항의 ----- ----- ----- ----- 세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3. ~ 4의2. (현행과 같음)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6. (생략) ②·③ (생략) <u><신 설></u>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①·② (생략) <u><신 설></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61조(소집) (생략)	제61조(소집) ① (현행 제60조의2 제1항제2호의2)

<신 설>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원이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 역안전도 진단은 서면진단과 현 지진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 ----- 매년 ----- -----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진단과 현 지진단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 저감노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1. 서면진단: 매년	③ (현행과 같음)
2. 현지진단: 격년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 ----- ----- -----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 ----- -----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 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 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 도지사	1. 시장·군수·구청장 및 ---- ----- ----- ----- -----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 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 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2. 시·군·구-----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 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 한 사항
	2.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폐업·재개신고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5120